

울산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2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구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묵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 2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봉종

변론 종결2021. 6. 9.

판결 선고2021.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한다), J 사이에 2018. 6.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I과 J에게 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8. 8. 30. 접수 제435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I 및 J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6. 5. 24.부터 2017. 11. 20.까지 I 또는 그 대표이사인 J에게 합계 24억 5,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I과 J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 4. 11. 원고와 I, J, J의 부 K(2018. 10.경 사망)의 촉탁으로 I과 J, K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억 5,600만 원을 2018.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8년 제748호로 작성되었다.

나. 피고들과 I, J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I과 J는 2018. 6. 21.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8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로

피고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받은 가압류 결정에 따른 등기 촉탁으로 2018. 8.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I과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I과 J는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도록 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I 및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원고는 I, J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I, J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I, J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8. 12. 18. J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 1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그밖의 주장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I과 J가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위 나머지 피고들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는바, 위 나머지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올라 제17호증의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8. 12. 18.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고, I과 J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 1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즉, 1) 원고는 I과 그 대표이사인 J, K로부터 부탁을 받아 2016. 5. 24.부터 2017. 11. 20.까지 I 및 J에게 I의 주택시행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 명목으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위 주택시행사업의 초기부터 그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I, J의 자금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8. 12. 18. M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별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J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약 18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그 유일한 재산인 양산시 ○ 전 1314.5㎡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원고는 ① 2018. 3.경 J가 작성해준 차용증에 기재된 '울산 P외 6필지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금융권 외 다수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② 양산시 ○ 전 1314.5㎡ 등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건 소송을 제기할 2018. 12. 18.경에는 I과 J의 채무액이 I, J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를 초과함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별건 소송의 소장에서 "위 ○ 전 지상의 신축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제3채무자들이 대위등기를 하여 가압류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된 날은 2018. 8. 30.이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적어도 별건 소송을 제기할 2018. 12. 18. I과 J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지혜

판사한윤영

판사신동욱

별지

1) 원고는 원상회복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누락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